

2016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1차) 변경공고

해외진출 중소기업에게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2016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1차 공고의 세부사업 중 「스타트업 IP보호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과 접수기간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4. 4.
특 허 청 장

1. 스타트업 IP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변경 내용

가. 컨설팅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 비율

구 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금	현물	정부지원금 한도액
변경전	80%	20%	10%	10%	32백만원
변경후	<u>70%</u>	<u>30%</u>	10%	<u>20%</u>	<u>28백만원</u>

나. 신청기간 : (변경전) '16. 3. 21(월) ~ 4. 8(금)

(변경후) '16. 3. 21(월) ~ 4. 15(금)

2. 사업 목적

-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전략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 모색

3. 지원 내용

- 기업 비즈니스 상황별 컨설팅 프로그램에 따라 컨설팅 수행기관의 맞춤형 분쟁예방 전략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제공

<세부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 내용
수출전략	수출지역 분쟁위험 특허 조사분석, 사전대응전략 제공
현안전략	해외기업과의 경고장 등 특정 현안극복을 위한 현안전략 제공
스타트업 IP보호	스타트업 기업의 수출전략 및 IP보호 전략 지원
K-브랜드 보호	상표·디자인 관련 해외 분쟁 예방·대응 전략 제공
소액	전주기적 컨설팅 내용을 소규모 업무단위별 지원
연계집중	분쟁장기화시 최종종결을 위한 집중전략 제공
해외 IP분쟁 모니터링	수출 제품·서비스 관련 해외분쟁 조사 및 진행과정 모니터링 제공

* (해외 IP분쟁 모니터링 사업)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별도 공고 예정

4. 세부 사업내용

4.1. 수출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가. 신청자격

○ 해외수출 또는 예정인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기업 대상기술이 해외경쟁사 특허의 copy제품인 경우 탈락할 수 있음

나. 지원내용

○ 수출(예정) 제품에 대한 맞춤형 특허 컨설팅 제공

세부구분	지원 내용
사전 예방전략	직·간접 수출지역 분쟁위험 특허 조사분석 및 사전대응전략
특허보증 전략	바이어의 해외 특허 분쟁위험성 문제 제기시 분석 지원
전시회 출품 대응	해외전시회 예정시 사전 특허분쟁 예방전략 및 전시회 출품 전략

○ 컨설팅 수행내용(기간 3개월)

- 전략적 수출방안 제시를 위해 수출(예정)제품과 관련된 해외특허 조사·대응방안 분석 등의 수행절차를 맞춤형으로 추진

○ 컨설팅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 비율

구 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금	현물	정부지원금 한도액
중소기업	70%	30%	20%	10%	28백만원
중견기업	50%	50%	30%	20%	20백만원

- * 정부지원금 한도액은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 비율에 따른 정부지원금의 한도액을 의미하며 ‘컨설팅 비용’은 IP-NAVI에 게시되는 ‘기준단가’에 따라 산정

- * 현물은 컨설팅을 보조하는 기업의 인력 참여(경쟁사·시장정보, 관련특허 선별, 회피설계 검증 등)로 인정할 수 있음

4.2. 현안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가. 신청자격

- 해외기업과 특허 관련 이슈를 갖는 중소기업

나. 지원내용

- 해외기업과의 경고장, 소송, 라이선스, 권리침해 등 극복을 위한 컨설팅 제공

세부구분	지원 내용
경고장 전략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장(침해중지 또는 로열티 요구)을 받은 경우 대응방안 및 협상전략
소송 전략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받은 경우 소송대응 및 협상 전략
라이선스 전략	해외기업과 이미 체결한 라이선스 갱신이 필요한 경우 대응 방안 및 로열티 등 협상전략
권리행사 전략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를 받아 피해를 받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권리행사 실행 등 피해방지

- 컨설팅 수행내용(기간 3개월~5개월)
 - 현안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상대특허에 대한 권리범위분석 및 협상전략·진행 등의 수행절차를 현안에 따라 맞춤형으로 추진
- 컨설팅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 비율

구 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금	현물	정부지원금 한도액
중소기업	70%	30%	20%	10%	28백만원
중견기업	50%	50%	30%	20%	20백만원

* 정부지원금 한도액 및 현물 해설은 수출전략 참조

4.3. 스타트업 IP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가. 신청자격

○ 해외수출 또는 예정인 스타트업 기업 중 “소기업”

- * 스타트업 기업 : '11년~지원신청일 사이 창업한 기업(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합병일 표시] 기준, 법인 이외 기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 인수합병 기업인 경우 인수합병 전 기업의 창업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창업일로 봄)
-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소기업

☞ 신청기업 대상기술이 해외경쟁사 특허의 copy제품인 경우 탈락할 수 있음

나. 지원내용

○ 스타트업 기업의 수출전략 및 IP전략 컨설팅 제공

세부구분	지원 내용
사전 예방전략	직·간접 수출지역 분쟁위험 특허 조사분석, 사전대응전략 및 IP전략
특허보증 전략	바이어의 해외 특허 분쟁위험성 문제 제기시 분석 및 IP전략 지원
전시회 출품 대응	해외전시회 사전 특허분쟁 예방전략 및 전시회 출품 전략 및 IP 전략

○ 컨설팅 수행내용(기간 3개월)

- 스타트업 기업의 수출전략 및 적극적 IP전략 제시를 위해 회피 설계·역공격 특허발굴을 중심의 수행절차를 맞춤형으로 추진

○ 컨설팅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 비율

구 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금	현물	정부지원금 한도액
소기업	70%	30%	10%	20%	28백만원

* 정부지원금 한도액 및 현물 해설은 수출전략 참조

4.4.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가. 신청자격

- 수출(예정) 중이거나 지재권 침해를 받은 중소기업

나. 지원내용

- 해외 상표·디자인 관련 분쟁예방 및 대응 컨설팅 제공

세부구분		지원 내용
예방		수출(예정)시 또는 무단 해외선등록 침해시 상표 현지화 전략
대응	무단선등록	무단 해외상표·디자인 선등록에 대한 무효(취소·거절) 및 협상전략
	권리행사	해외 상표, 디자인을 침해한 모조품에 대한 권리행사 전략

- 컨설팅 수행내용(기간 3개월)

- (예방) 해외 유사상표 등을 고려한 현지 브랜드 네이밍, 권리화 전략 등 맞춤형 수행절차 추진
- (대응) 상대방의 권리 또는 제품 등을 고려한 맞춤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절차 추진

- 컨설팅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 비율

구 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금	현물	정부지원금 한도액
중소기업	70%	30%	20%	10%	예방 5백만원 대응 15백만원
중견기업	50%	50%	30%	20%	

* 정부지원금 한도액 해설은 수출전략 참조

* 현물은 컨설팅을 보조하는 기업의 인력 참여(경쟁사·시장정보, 상표무효근거 자료 수집 및 제공 등)로 인정할 수 있음

4-5. 소액 컨설팅 지원사업

가. 신청자격

- 해외수출(예정) 중이거나 해외기업과 특허 관련 이슈를 갖는 중소기업

나. 지원내용

- 수출·현안전략 컨설팅을 소규모 업무단위로 신속 지원

업무단위	지원 내용
위험분석	수출지역 해외 분쟁위험 특허 조사·분석 및 분쟁위험성 도출
대응전략	특정 해외기업 특허에 대한 대응전략 시나리오 수립
회피기술 방안	해외기업 특허 회피를 위한 제품 설계변경, 특허 개발전략
계약전략	해외기업과의 기술관련 비밀유지계약서 또는 IP보증 계약서 또는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 신청시 하나의 업무단위만 선택해야 하며, 1년 내 2회 지원 가능

- 컨설팅 수행내용(기간 1개월~2개월)

- 기업 희망 업무단위의 추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수행하되 비즈니스 현황에 따른 맞춤형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신속 추진

- 컨설팅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 비율

구 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 부담비율	현금	현물	정부지원금 한도액			
					위험분석	대응전략	회피방안	계약전략
중소기업	70%	30%	20%	10%	10백만원	12백만원	6백만원	7백만원
중견기업	50%	50%	30%	20%	7백만원	9백만원	4백만원	5백만원

* 정부지원금 한도액 및 현물 해설은 수출전략 참조

4.6. 연계집중 컨설팅 지원사업

가. 신청자격

- 분쟁이슈 지원기업으로서 분쟁이 지속 중인 중소·중견기업
 - * 분쟁이슈 지원기업 : '16년 이전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중 현안전략, K-브랜드 보호-대응, 소액(분쟁이슈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기업
 - * 중소·중견기업 기준 : 수출전략 컨설팅 지원사업과 동일

나. 지원내용

- 장기화된 분쟁의 최종종결을 위한 맞춤형 지재권 컨설팅 제공
 - * 기존 지원내용과 동일 분쟁사안으로 장기화되었는지 여부는 발표평가에서 판단
- 컨설팅 수행내용(기간 3개월~5개월)
 - 기존 지원받은 세부사업 지원내용에 따라 수행절차를 진행하되 분쟁종결을 위한 집중분야를 맞춤형으로 수행
- 컨설팅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 비율

구 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금	현물	정부지원금 한도액
중소기업	70%	30%	20%	10%	28백만원
중견기업	50%	50%	30%	20%	20백만원

* 정부지원금 한도액 및 현물 해설은 수출전략 참조

다. 지원조건

- 기지원된 동일이슈에 대해 2년간 2회에 한하여 연계집중 컨설팅 지원
- 연계집중 지원기업은 분쟁에 유리하게 종결시 우수사례로서 전파할 의무를 가짐

5. 신청 절차

가. 신청기간

(1) 정기모집

- (대상사업) 수출전략, 연계집중, 스타트업 IP보호
- (신청기간) '16. 3. 21(월) ~ 4. 8(금)
단, 스타트업 IP보호 '16. 3. 21(월) ~ 4. 15(금)

* 신청기간 외에는 신청 불가

(2) 수시모집

- (대상사업) 현안전략, 소액, K-브랜드 보호
 - (신청기간) '16. 3. 21(월) ~ 예산 소진시까지
- * 정기모집 기간 접수시 정기모집과 함께 심사를 진행하며, 정기모집이 아닌 기간에 신청한 경우 월단위로 접수 및 심사 진행

나. 신청방법

-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www.ip-navi.or.kr)에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일정기간 수정가능)
- * [별첨1]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신청 절차 안내
-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은 세부사업 및 구분과 관계없이 기업당 연 1회만 지원(단, 소액 컨설팅은 연 2회 지원 가능)

다. 희망 컨설팅 수행기관 선택

-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제공되는 컨설팅전문기관 리스트 중 희망 컨설팅 수행기관을 선택
- * 신청시 리스트 중 '비선택'을 선택하고 신청 후 일정기간 이내에 신청서 수정을 통해 희망 컨설팅 수행기관 선택 가능
- 단, 컨설팅전문기관 리스트에 없는 수행기관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문의하여 진행

라. 희망 컨설팅 수행기관 승인 및 자료제출

- 기업의 요청에 대해 희망 컨설팅 수행기관은 수행여부를 승인
- 희망 컨설팅 수행기관은 수행인력 등록신청서, 사전컨설팅 보고서, 컨설팅 추진계획서(기업 날인)를 지정기한까지 온라인 제출

6. 심사 및 추진 절차

가. 지원결정 방식

(1) 서류평가

- (1차, 기업선정심사) 신청서 내용 및 신청서 첨부서류만으로 평가, 우선지원 대상 결정
 - * [별첨2] 기업선정 심사기준표 참조
- (2차, 수행기관매칭심사) 수행인력 등록신청서를 기준으로 희망 컨설팅 수행기관의 전문성 등을 통한 매칭 여부 결정
- (3차, 컨설팅계획 적절성심사) 컨설팅 계획이 본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적절성 평가
- (지원결정) 1차~3차 심사 모두 통과시 지원결정

(2) 발표평가(필요시)

- (대상사업) 연계집중 컨설팅(필수), 스타트업 IP보호 컨설팅(선택적), 현안전략 중 세부구분에 속하지 않는 이슈에 대한 컨설팅 신청시
- (평가방식) 기업선정, 수행기관매칭의 정성평가, 컨설팅계획 적절성 평가를 발표평가에 의해 진행

(3) 지원결정 통지

- 지원결정된 기업에 지원결정서 통지

나. 추진 절차(1차 공고 기준)

신청 및 접수 (3.21 ~ 4.8)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www.ip-navi.or.kr 온라인 접수)
추진계획서 등 접수 (4.11 ~ 4.25)	신청서·첨부서류 보완 및 추진계획서 등 제출
선정심사 및 지원결정 통지 (4.25 ~ 4.29)	선정심사, 지원결정 통지 및 기업-수행기관 2자 계약 체결
기업부담금 납부 및 컨설팅 진행 (5.2 ~)	▶ 기업부담금 납부(5.2~5.27) ▶ 2차 서면보고,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교차분석 제공(KOIPA) ▶ 컨설팅 완료보고 및 정부지원금 지급
만족도 조사 및 우수사례 선정	▶ 만족도, 사후추적 및 경제효과 조사 ▶ 우수사례 선정

7. 문의처

o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예방팀

- 전화 : (02) 2183-5871~9 - e-mail : ipkoipa@koipa.re.kr
- 주소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6층)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 www.koipa.re.kr

[별첨1]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신청 절차 안내

[별첨2] 기업선정 심사기준표

[별첨3] 컨설팅 상위평가(S등급) 분쟁대응전문가 리스트 및 전문가 관리방안

[별첨 1]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신청 절차 안내



① 사업공고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www.koipa.re.kr) 또는 IP-NAVI 홈페이지(www.ip-navi.or.kr) 사업공고 게시판 게재

② 지원기업 온라인 사업신청서 요청 방법

(1) IP-NAVI 홈페이지(www.ip-navi.or.kr) 회원가입

- ※ 회원가입은 최초 개인회원으로 가입하나 기업아이디로 전환되므로 되도록 변동 가능성이 적은 이메일을 아이디로 사용 필요 → 비밀번호 변경 안내 6페이지
- ※ 기존 회원으로서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 → 아래 로그인 화면 하단의 '찾기' 클릭

(2) IP-NAVI 홈페이지 로그인('사업신청시스템 로그인' 버튼 클릭)



- ※ 사업신청 및 관리를 위해서는 IP-NAVI에서 '사업신청시스템 로그인'으로 로그인 해야 함('IP-NAVI 로그인'으로는 신청 불가)

(3) '지원사업진행관리' 및 '기업 정보 관리'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IP-NAVI homepage. In the top navigation bar, the '지원사업진행관리' (Support Business Progress Management) link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n arrow. In the left sidebar, the '기업 기본 정보 관리' (Company Basic Information Management) link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n arrow.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a table for company information management, including fields like company name, registration number, and email.

(4) 위 화면의 ①'기업 기본 정보 관리', ②'경영정보 관리' ③'지식재산 역량 정보'의 3개 정보입력

- ※ '기업 기본 정보 관리'는 회원가입 후 '사업신청시스템 로그인'시 자동으로 입력창 생성됨, 이미 작성한 기업은 입력 불필요
- ※ '경영 정보관리', '지식재산 역량정보'는 2015년에 이미 작성한 기업도 새로 작성해야 하며, 입력 없이 지원사업 신청시 자동으로 입력창이 연결됨

(5) 주메뉴의 '지원사업'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IP-NAVI homepage. The '지원사업' (Support Business) link in the main navigation bar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n arrow.

(6) 좌측의 '컨설팅 신청'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IP-NAVI '지원사업' (Support Business) page. In the left sidebar, the '컨설팅 신청' (Consulting Application) link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n arrow.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information about consulting services, including a section for '신청기업' (Applying Company) and a list of services.

(7) 신청 공고의 접수 마감일을 확인하고 접수 마감일 전인 공고 '제목' 클릭

관리번호	제목	사업신청	작성자	접수 마감일	조회	첨부파일
1	테스트 클릭	신청하기 ▶	관리자	2016.03.11 18:00	29	
2	15년도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3차 공고(종료)	신청하기 ▶	운영자	2015.10.30 12:00	745	

※ 상시지원과 정기지원 공고 두 개 공고가 함께 게시될 계획이며, 상시지원 대상과 정기지원 대상 사업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고 기업현황에 따라 신청(사업을 잘못 신청한 경우 전환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8) 공고 내용 우측 상단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지원신청서 요청(팝업)

※ 공고 리스트의 '신청하기' 버튼을 통한 지원신청서 작성도 가능하나 공고 내용의 확인 후 신청서 작성 권장

③ 지원신청서 작성 방법

- (기업현황) '기업 기본 정보 관리'와 '경영정보 관리'에서 입력한 사항 자동표시
- (컨설팅사업 선택) 다음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희망 사업을 선택

정기접수 공고 신청가능 사업		수시접수 공고 신청가능 사업		
메뉴1 (사업선택)	메뉴2 (세부유형 선택)	메뉴1 (사업선택)	메뉴2 (세부유형 선택)	메뉴3 (세부유형 선택)
수출 전략	사전 예방전략	현안 전략	경고장 전략	-
	특허보증 전략		소송 전략	-
	전시회 출품 대응		라이선스 전략	-
스타트업 IP보호	사전 예방전략		권리행사 전략	-
	특허보증 전략	소액	위험분석	사전 예방전략
	전시회 출품 대응		대응전략	특허보증 전략
연계집중	경고장 전략		회피기술방안	전시회 출품 대응
	소송 전략		계약전략	경고장 전략
	라이선스 전략			소송 전략
	권리행사 전략			라이선스 전략
	K-브랜드 보호 대응-무단선등록	K-브랜드 보호	예방	-
	K-브랜드 보호 대응-권리행사		대응-무단선등록	-
			대응-권리행사	-

- (컨설팅 담당 수행사 지정) '컨설팅 담당 수행사 지정'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되는 리스트에서 희망 수행사 선택 및 저장(최하단 '수행사 선택' 클릭)

수행기업 고유번호	수행기업 명	사업자 번호	기술분야	업무분야
○ A00059	특허법인 원문	020-87-79576	기계/자동차 화학/석유 전기/전자	관리분야 경영컨설팅 라이선스 계약관리
○ A00060	위너비(특허법률사무 소)	220-09-93742	화학/석유	관리분야 경영컨설팅 라이선스 계약관리
○ A00061	(주)지텍스	220-88-81552	화학/석유 전기/전자	관리분야 경영컨설팅 라이선스 계약관리
○ A00062	비열티특허법률사무 소	214-14-12801	기계/자동차 전기/전자	관리분야 경영컨설팅 라이선스 계약관리

- ※ 수행사 리스트창에서 'Ctrl+F'를 눌러 나타나 는 검색창에서 희망 수행사 명칭 검색 가능
- ※ 희망 수행사를 정하지 못한 경우 'Ctrl+F'로 '비선택'을 찾아 선택 및 저장
- ※ 희망 수행사가 리스트에 없는 경우 '비선택' 을 찾아 선택 및 저장 후 **보호원 문의**

- (동의 항목)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지원기업 현황정보)

1. 지식재산 역량 : '지식재산 역량정보'의 내용 자동표시

2. 컨설팅 신청 세부사항

- 대상제품(기술)명(필수입력) : 제품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
- (예상) 경쟁사(국적) : **해외 경쟁사 기재(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지원불가)**
- 대상제품 분야 : 제품 취지에 맞도록 기재
- 대상제품 수출액 : '향후' 항목은 내년도 예상 수출액 기재
- 대상제품 수출국가 : **국내판매만** 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대한민국' 체크
- 기업주요 연혁 : 최근 자사 동향 중심으로 기재
- 지원신청의 취지 및 개요 : 분쟁이 없는 경우 판매(개발)현황 및 전망, 경쟁관계, 경쟁사의 분쟁현황 등 기재
- 컨설팅 요청사항 : 컨설팅 유형의 취지에 맞추어 간단하게 기재

- (첨부파일) 설명에 따라 첨부파일 첨부

No	명칭	파일 해설
1	사업자등록증(필수)	없음
2	기업규모[소, 중, 중견]증명서(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서 확인 및 발급 · 중견기업 - 중견기업정보마당(www.hpe.or.kr)에서 확인 및 발급 · 스타트업기업 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 소기업 증명서 발급 ②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합병일 표시)
3	대상제품 관련 지식재산 보유 확인서(필수)	[양식1]의 지식재산 보유 확인서 작성 및 날인서류 제출
4	수출국가 증명서(수출실적이 있는 기업만 제출)	· 한국관세무역개발원(trass.kctdi.or.kr) 또는 무역협회(webdocu.kita.net, 회원사의 경우)에서 '11년~'16년 국가별 실적증명서 발급 · 발급이 곤란한 경우 보호원에 문의
5	대상제품 현황 증명서(필수)	[별표1] 참조 증명서류가 복수인 경우 압축파일로 제출
6	신청 및 동의확인서(필수)	[양식2]의 신청 및 동의 확인서 작성 및 날인서류 제출
7	가산점 증명서(비필수)	[별표2] 참조
8	감점 제외 확인서(과거 지원기업만 필수)	[양식3]의 감점 제외 확인서 작성 및 날인서류 제출

④ 지원신청 저장('제출' 버튼 별도로 없음)

- 필수항목(①컨설팅사업 선택, ②컨설팅 담당 수행사 지정, ③동의항목, ④대상 제품명)만 입력으로 신청서 저장 가능 → 공고마감 전 또는 요청기간까지 수정을 통해 미입력 항목 입력 또는 기존 저장내용의 수정 가능

⑤ 지원신청서 확인 및 수정

(1) IP-NAVI 홈페이지 로그인('사업신청시스템 로그인' 버튼 클릭)



※ 사업신청 및 관리를 위해서는 IP-NAVI에서 '사업신청시스템 로그인'으로 로그인 해야 함(IP-NAVI 로그인으로는 신청 불가)

(2) '지원사업진행관리' 클릭



(3) 컨설팅 진행상황 내역 화면에서 대상제품/기술명을 클릭



(4) 표시되는 신청서 화면에서 최하단의 '수정' 버튼 클릭

→ 수정가능 양식으로 전환

⑥ 비밀번호 변경

(1) IP-NAVI 홈페이지에서 'IP-NAVI 로그인'으로 로그인('사업신청시스템 로그인'으로는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없음)



※ 'IP-NAVI 로그인'으로 로그인시 사업신청시스템 로그인 화면이 나올 수 있으나 다시 'IP-NAVI 로그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하거나 상단에 IP-NAVI 로그아웃이 표시된다면 로그인된 상태임

(2) MY page를 클릭한 후 왼쪽 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클릭하여 변경



대상제품 관련 지식재산 보유현황 확인서

☐ 대상제품 정보

신청기업명	
대상제품(기술) ※ K-브랜드 보호의 경우 상표·서비스표 명칭 및 관련 상품·서비스 기재	

☐ 대상제품(기술) 관련 지식재산 보유 현황

No	국가	권리유형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상표는 상표/지정상품)	대상제품과의 관계	공개 여부	등록 여부
1	한국	특허	2000-0000001	손톱깍기	대상제품 자체	o	o
2	한국	특허	2000-0000002	손톱깍기용 칼날	대상제품의 부품	o	x
3							
4							

- ※ 신청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으로서 대상제품과 관련 높은 것으로 최대 4건 기재
- ※ 미공개인 경우 출원번호 통지서 추가 첨부 필요(보호원에서 별도로 명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대상제품과의 관계가 불명확한 지식재산은 기업선정심사 점수산정시 불인정
- ※ 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전에는 타 증명서류와 관계없이 당연 탈락, 선정 후에는 선정 취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청기업명 :

대 표 자 :

(직인)

지원사업 신청 및 동의 확인서

당사는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 본 온라인 지원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으로 지원신청하며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하는 바입니다.

- 당사는 지원신청서의 작성 내용 및 자료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는데 동의함
- 당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또는 특허청이 받는 내·외부감사에 당사의 신청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제출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 당사는 당사에서 수행기관에 의뢰하는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이하, '컨설팅' 이라 함)의 진행과 관련하여 정부지원금 보조를 조건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마련한 절차를 충실히 따를 것이며, 컨설팅 사업과 관련한 보고회, 간담회, 만족도조사 및 설문조사에도 응하는 것에 동의함
- 당사는 분쟁대응전문가 풀에 가입한 대리인을 수행기관으로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풀에 가입하지 않은 수행기관을 선택할 것임
- 당사는 당사에서 선택한 수행기관의 자격에 대한 평가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위임하며 위 평가결과에 따르도록 함
- 당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원결정에 따라 당사가 수행기관에 의뢰하는 컨설팅의 비용을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으로 충당하되,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금과 관련하여 본 컨설팅 내용을 벗어나는 요구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나 수행기관에 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요구의 적발 시 향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부여하는 불이익을 받을 것임
- 당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결정하는 과업내용에 따라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것이며, 위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기업부담금을 수행기관에 지급할 것임
- 당사는 수행기관이 수행하는 컨설팅의 과업범위 결정, 컨설팅 금액 결정, 진행관리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위임하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평가에 따라 컨설팅의 비용이나 정부지원금액이 삭감될 경우 그 삭감 조치에 동의함
- 당사는 컨설팅 완료 후 수행기관이 당사를 대리하여 수행기관의 명의로 완료확인서 및 정부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승인으로 컨설팅 관련 정부지원금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수행기관에게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 동의함
- 당사는, 본 컨설팅의 결과물에 대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목적 활용(예: 보호원 발행의 서적, 전자서적 등을 통한 on-off line 상의 컨설팅 우수사례 홍보 또는 전파, 기업비밀이 포함되지 않은 분석결과의 가공 및 활용 등)에 동의함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직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과거 지원내용」 감점 제외 확인서

- ▷ 심사기준표 [별표2]에 따른 감점 사항 중 '과거 지원내용'의 감점 제외 사유를 기재하는 확인서입니다
- ▷ 과거 지원횟수에 따른 감점은 제외될 수 없습니다
- ▷ 과거 지원내용과 제품 및 분석범위가 동일한 경우 연계집중 지원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상제품 정보

신청기업명	
대상제품(기술)	
※ K-브랜드 보호의 경우 상표·서비스표 명칭 및 관련 상품·서비스 기재	

☐ 과거 지원내용과의 비교

No	지원지원 대상		현재 대상제품과의 차이	비고
	과거 지원년도	과거 대상제품(기술)		
1				
2				
3				
No	지원지원 대상		현재 컨설팅 신청범위	차이점
	과거 지원년도	과거 컨설팅 범위		
1				
2				
3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청기업명 :

대 표 자 :

(직인)

[별표1] 첨부파일5 대상제품 현황 증명서 제출 방법

사업선택	세부유형 선택	대상제품 현황 증명서 세부설명	
		특이항목 배점	각 배점별 제출서류(가능한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으로 제출)
수출 전략	사전 예방전략	① 40점	'15년부터 발생한 해외 납품·공급계약서, 발주서 등(단, 신청기업 INVOICE 불인정)
		② 35점	'15년부터 발생한 국내 납품·공급계약서, 발주서 등(단, 신청기업 INVOICE 불인정)
		③ 25점	'15년 이전 국내외 납품·공급계약서, 발주서 등(단, 신청기업 INVOICE 불인정) 또는 시제품 사진, 도면, 설계서, 특허명세서 중 하나
	특허보증 전략	① 40점	'15년부터 발생한 대상제품 관련 납품예정업체의 특허분쟁 위험 검증 요구서류(특허분쟁 위험성만 없다면 납품받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어야 함) - 이메일 인정
		② 35점	'15년부터 발생한 대상제품 관련 납품진행업체의 특허분쟁 위험 검증 요구서류(이메일 포 함) 및 기존 납품 진행 증명서류
		③ 25점	'15년부터 발생한 대상제품 관련 상대업체의 특허분쟁 위험 검증 요구서류(특허분쟁 위험 성만 없다면 납품받겠다는 의사 불포함 또는 불명확시) - 이메일 인정
		※15년 이전 특허분쟁 위험 검증 요구만 있거나 구두로 요청을 받은 경우 '사전 예방전략'으로 신청	
	전시회 출품 대응	① 40점	'15년부터 발생한 해외 납품·공급계약서, 발주서 등(단, 신청기업 INVOICE 불인정)
		② 35점	신청일 이후 참가 예정인 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확인서류(전시회 주최기관 발급)
		※전시회 출품 신청 확인서류가 없는 경우 '사전예방전략'이나 '특허보증 전략' 신청	
현안 전략	경고장 전략	① 40점	'15년부터 발생한 해외기업의 특허침해 경고장(경고장에 특허 및 신청기업 제품 특정)
		② 35점	'15년부터 발생한 해외기업의 특허침해 경고장(경고장에 상대기업 특허 또는 신청기업 제 품 중 어느 하나만 특정)
		③ 25점	'15년부터 발생한 해외기업의 특허침해 경고장(경고장에 특허와 신청기업 제품 불특정)
	소송 전략	40점	'15년부터 발생한 해외기업의 특허침해 소송 소장
	라이선스 전략	① 40점	신청일 기준 해외기업과의 라이선스 만료(갱신)일이 6개월 미만 남은 라이선스 계약서
		② 35점	신청일 기준 해외기업과의 라이선스 만료(갱신)일이 12개월 미만 남은 라이선스 계약서
		③ 25점	신청일 기준 해외기업과의 라이선스 만료(갱신)일이 12개월 이상 남은 라이선스 계약서
	권리행사 전략	다음 3개 서류 제출 필요	
		① 40점	1) '15년부터 발생한 해외 납품·공급계약서, 발주서 등(단, 신청기업 INVOICE 불인정) 및 2) 해외 특허권 등록서류(등록공고, 필요시 양도증) 3) 해외기업의 침해품 제조·유통 증빙
		② 35점	다음 3개 서류 제출 필요

사업선택	세부유형 선택	대상제품 현황 증명서 세부설명	
		특이항목 배점	각 배점별 제출서류(가능한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으로 제출)
			1) `15년부터 발생한 국내 납품·공급계약서, 발주서 등(단, 신청기업 INVOICE 불인정) 및 2) 해외 특허권 등록서류(등록공고, 필요시 양도증) 3) 해외 침해품 제조·유통 증빙서류
소액	사전 예방전략		‘사전 예방전략’ 세부설명 참조
	특허보증 전략		‘특허보증 전략’ 세부설명 참조
	전시회 출품 대응		‘전시회 출품 대응’ 세부설명 참조
	경고장 전략		‘경고장 전략’ 세부설명 참조
	소송 전략		‘소송 전략’ 세부설명 참조
	라이선스 전략		‘라이선스 전략’ 세부설명 참조
	권리행사 전략		‘권리행사 전략’ 세부설명 참조
스타트업 IP보호	사전 예방전략		수출전략의 ‘사전 예방전략’ 참조 ※발표심사 희망시 발표자료 제출(첨부파일명에 발표자료 명기)
	특허보증 전략		수출전략의 ‘특허보증 전략’ 참조 ※발표심사 희망시 발표자료 제출(첨부파일명에 발표자료 명기)
	전시회 출품 대응		수출전략의 ‘전시회 출품 대응’ 참조 ※발표심사 희망시 발표자료 제출(첨부파일명에 발표자료 명기)
K-브랜드 보호**	예방	① 40점	다음 2개 서류 제출 필요(1개 파일로 압축) 1) 신청기업의 국내 또는 해외 판매사실(상표, 서비스표가 표시된 제품, 서비스의 실제 사진 등) 증빙서류 2) 신청기업 상표·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 한 제3자의 해외 상표·디자인권(출원 포함)의 존재 증빙서류
		② 35점	다음 2개 서류 제출 필요(1개 파일로 압축) 1) 직전년도 재무재표(매출액 1억원 이상) 2) 신청기업의 국내 또는 해외 판매사실(상표, 서비스표가 표시된 제품, 서비스의 실제 사진 등) 증빙서류
		③ 25점	다음 2개 서류 제출 필요(1개 파일로 압축) 1) 직전년도 재무재표(매출액 1억원 미만) 2) 신청기업의 국내 또는 해외 판매사실(상표, 서비스표가 표시된 제품, 서비스의 실제 사진 등) 증빙서류
	대응-무단선등록	① 40점	다음 3개 서류 제출 필요(1개 파일로 압축)

사업선택	세부유형 선택	대상제품 현황 증명서 세부설명	
		특이항목 배점	각 배점별 제출서류(가능한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으로 제출)
			1) 직전년도 재무재표(매출액 1억원 이상) 2) 신청기업의 국내 또는 해외 판매사실(상표, 서비스표가 표시된 제품, 서비스의 실제 사진 등) 증빙서류 3) 신청기업 상표·디자인과 동일 한 제3자의 해외 상표·디자인권(출원 포함)의 존재 증빙서류
		② 35점	다음 3개 서류 제출 필요(1개 파일로 압축) 1) 직전년도 재무재표(매출액 1억원 이상) 2) 신청기업의 국내 또는 해외 판매사실(상표, 서비스표가 표시된 제품, 서비스의 실제 사진 등) 증빙서류 3) 신청기업 상표·디자인과 유사 한 제3자의 해외 상표·디자인권(출원 포함)의 존재 증빙서류
		③ 25점	다음 3개 서류 제출 필요(1개 파일로 압축) 1) 직전년도 재무재표(매출액 1억원 미만) 2) 신청기업의 국내 또는 해외 판매사실(상표, 서비스표가 표시된 제품, 서비스의 실제 사진 등) 증빙서류 3) 신청기업 상표·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3자의 해외 상표·디자인권(출원 포함)의 존재 증빙서류
	대응-권리행사	① 40점	다음 3개 서류 제출 필요(1개 파일로 압축) 1) 직전년도 재무재표(매출액 1억원 이상) 2) 신청기업의 국내 또는 해외 판매사실(상표, 서비스표가 표시된 제품, 서비스의 실제 사진 등) 증빙서류 3) 신청기업 상표·디자인과 동일 한 제3자 모조품의 해외 유통 존재 증빙서류
		② 35점	다음 3개 서류 제출 필요(1개 파일로 압축) 1) 직전년도 재무재표(매출액 1억원 이상) 2) 신청기업의 국내 또는 해외 판매사실(상표, 서비스표가 표시된 제품, 서비스의 실제 사진 등) 증빙서류 3) 신청기업 상표·디자인과 유사한 제3자 모조품의 해외 유통 존재 증빙서류
		③ 25점	다음 3개 서류 제출 필요(1개 파일로 압축) 1) 직전년도 재무재표(매출액 1억원 미만) 2) 신청기업의 국내 또는 해외 판매사실(상표, 서비스표가 표시된 제품, 서비스의 실제 사진 등) 증빙서류 3) 신청기업 상표·디자인과 동일·유사 한 제3자 모조품의 해외 유통 존재 증빙서류
연계집중		발표심사 희망내용)	자료(PPT형식) 제출(분쟁배경, 기존 컨설팅 요약, 분쟁현황, 현 분쟁결과와 파급력, 지원

[별표2] 가산점 증명서 제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증명서 제출(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 불요)

No	증명서	비고
1	지역지식재산센터 추천서	- 다음 지역지식재산센터만 인정 강원(원주), 경남(창원), 광주, 군산, 대구, 대전, 부산남부, 서울, 울산, 인천, 전남(목포), 전북(전주), 제주, 진주, 춘천, 충남(천안), 충북(청주), 순천, 경북, 구미, 태백, 충주, 서산, 경기남부
2	업종단체 회원증	- 다음 업종단체 회원증만 인정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RFID/USN협회
3	이노비즈 인증서	선정서 제출일이 인증기간 이내인 때에만 인정
4	WC300 지정서	선정서 제출 전 지정 제외시 불인정
5	소송보험 가입 보험증서	보증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인정

[별첨2]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사업 심사기준표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심사기준표						
구분	항목		배점	현황별 점수		
				20	15	10
기본 항목	기업규모		20	중소기업	중견기업	-
	대상제품 관련 특허·실용신안 보유수		20	기본점수 5점(시제품 10점) + 국내외 출원·등록 건수 × 5점 (1건 등록된 경우 출원1, 등록1로서 10점) - 국제 협약 출원은 출원 1건으로 간주, PCT국내단계 진입은 진입 국가별로 1건씩 산정, EP출원·진입·등록은 각각 출원·진입·등록 1건으로 간주		
	신청기업 전체 수출국가 ('11년~'16년 수출)		20	5개국 이상 (단 창업 후 5년내 기업은 1개국 이상)	1~4개국 또는 간접수출 ¹⁾ (단 창업 후 5년내 기업은 '예정'시)	예정 (단 창업후 5년 내 기업은 해당 없음)
특이 항목 ²⁾ (소액 컨설팅은 대상제품 현황에 맞춰 유사 사업 선택·적용)	세부사업별[참고1]		40	40	35	25
	수출 전략, 스타트업IP 보호	사전 예방전략, 전시회 출품 대응	(40)	해외판매 (간접수출 포함)	국내판매 또는 해외 전시회 참가 예정	시제품 또는 '15년 이전 국내외 판매
		특허보증 전략	(40)	납품계약 체결직전	계약 체결완료 후 납품 진행 중	단순 제품소개 단계
	현안 전략	경고장 전략, 소송 전략	(40)	제품·특허 특정 (특허침해 소장 수령 포함)	제품 또는 특허 중 하나만 특정	제품·특허 불특정
		권리행사 전략 ³⁾	(40)	지원기업의 대상제품 수출 중	지원기업의 대상제품 국내판매	-
		라이선스 전략	(40)	기존 라이선스 만료(갱신)일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기존 라이선스 만료(갱신)일이 6~12개월 남은 경우	기존 라이선스 만료(갱신)일이 12개월을 초과하여 남은 경우
	연계집중 및 기타 ⁴⁾		(40)	발표에 의한 심사위원회 평가		
	합계		100			
가점			[참고2] 참조			
감점			[참고2] 참조			

※ 신청서의 첨부자료를 증거자료로 하여 평가하되 수출국가 및 특이항목 증거자료 (라이선스 갱신, '15년 이전 국내외 판매 제외)는 '15년부터 발생한 자료만으로 평가

※ 지원결정 여부는 공고별 현황에 따라 결정

- 1) 간접수출 : 타기업이 신청기업 대상제품을 납품받아 대상제품을 포함한 제품 수출시
- 2) 복수 세부사업 또는 현황에 동시 적용 가능시 가장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여 증거자료 제출
- 3) 권리행사 전략은 해외기업 침해사실이 존재하고 신청기업이 유효한 해외 특허권 등을 보유한 경우만 신청 가능(등록 전 신청 불가)
- 4) 해외기업과의 관계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로서 예시된 현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예: 부정경쟁 행위, 영업비밀 침해 등) 또는 스타트업 IP보호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기타를 선택하여 발표심사 진행 가능

K-브랜드 보호컨설팅 심사기준표

구분	항목	배점	점수		
			20	15	10
기본 항목	기업규모	20	중소기업	중견기업	-
	대상제품·서비스 관련 상표·디자인 보유수	20	기본점수 5점 + 국내외 출원·등록 건수 × 5점 (1건 등록된 경우 출원1, 등록1로서 10점) - 국제 협약 출원은 출원 1건으로 간주		
	신청기업 전체 수출국가 ('11년~'16년 수출)	20	5개국 이상	1~4개국 또는 간접수출 ¹⁾	예정
지원필요성 ²⁾ (아래 평가기준 참조)		배점	40	35	25
		40	지원필요성 높음	지원필요성 보통	지원필요성 낮음
합계		100			
가점			[참고2] 참조		
감점			[참고2] 참조		

<지원필요성 평가기준>

평가	세부구분	세부 기준
높음 (40점)	예방	신청기업 상표·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제3자의 해외 상표·디자인권(출원 포함)이 존재
	대응	- 무단 선등록 - 신청기업 상표·디자인과 동일한 제3자의 해외 상표·디자인권(출원 포함)이 존재하고 - 신청기업 직전년도 매출 1억원 이상일 것
		- 권리 행사 - 신청기업 상표·디자인과 동일한 제3자 모조품의 해외 유통이 존재하고 - 신청기업 직전년도 매출 1억원 이상일 것 - 단, 신청기업은 관련 지재권을 해외에 보유하고 있어야 함
보통 (35점)	예방	신청기업 직전년도 매출 1억원 이상일 것
	대응	- 무단 선등록 - 신청기업 상표·디자인과 유사(비동일)한 제3자의 해외 상표·디자인권(출원 포함)이 존재하고 - 신청기업 직전년도 매출 1억원 이상일 것
		- 권리 행사 - 신청기업 상표·디자인과 유사(비동일)한 제3자 제품의 해외 유통이 존재하고 - 신청기업 직전년도 매출 1억원 이상일 것 - 단, 신청기업은 관련 지재권을 해외에 보유하고 있어야 함
낮음 (25점)	예방	신청기업 직전년도 매출 1억원 미만
	대응	- 무단 선등록 - 신청기업 직전년도 매출 1억원 미만이고, - 신청기업 상표·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제3자의 해외 상표·디자인권(출원 포함)이 존재할 것
		- 권리 행사 - 신청기업 직전년도 매출 1억원 미만이고, - 신청기업 상표·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제3자 제품의 해외 유통이 존재할 것 - 단, 신청기업은 관련 지재권을 해외에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신청서의 첨부자료를 증거자료로 하여 평가하되 수출국가 및 지원필요성 증거자료는 '15년부터 발생한 자료만으로 평가

※ 신청기업은 대상 상표 관련 제품·서비스의 국내 또는 해외 판매·제공 실적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지원결정 여부는 공고별 현황에 따라 결정

1) 간접수출 : 타기업이 신청기업 대상제품을 납품받아 대상제품을 포함한 제품 수출시

2) 복수 세부 기준에 동시 적용 가능시 가장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여 증거자료 제출

[참고1] 세부사업별 설명

사 업		세부구분	지 원 내 용
수출 전략	사전 예방전략		직·간접 수출지역 분쟁위험 특허 조사분석 및 사전대응전략
	특허보증 전략		바이어의 해외 특허 분쟁위험성 문제 제기시 분석 지원
	전시회 출품 대응		해외전시회 예정시 사전 특허분쟁 예방전략 및 전시회 출품 전략
현안 전략	경고장 전략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장(침해증지 또는 로열티 요구)을 받은 경우 대응방안 및 협상전략
	소송 전략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받은 경우 소송대응 및 협상 전략
	라이선스 전략		해외기업과 이미 체결한 라이선스 갱신이 필요한 경우 대응방안 및 로열티 등 협상전략
	권리행사 전략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를 받아 피해를 받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권리행사 실행 등 피해방지
소액	업무단위	위험분석	수출지역 분쟁위험성 조사·분석 및 분쟁위험성 도출
		대응전략	분쟁 위험이 높은 특허 등에 대한 대응전략 시나리오 수립
		회피기술 방안	제품 설계변경, 특허 개발전략
		계약전략	기술관련 비밀유지계약서 또는 IP보증 계약서 또는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스타트업 IP보호			직·간접 수출지역 분쟁위험 특허 조사분석 및 사전대응전략, 신규 IP전략
K-브랜드 보호	예방		수출(예정)시 또는 무단 해외선등록 침해시 상표 현지화 전략
	대응	무단선등록	무단 해외상표·디자인 先등록에 대한 무효(취소·거절) 및 협상전략
		권리행사	해외 상표, 디자인을 침해한 모조품에 대한 권리행사 전략

* 연계집중은 과거 지원받은 내용의 분쟁이슈가 장기화된 경우 기존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 단 기존 지원이 소액인 경우 현안전략 내용으로 지원가능

* 기업당 1년간 전체 사업 중에서 1회만 지원가능, 단 소액 컨설팅은 2회 지원

[참고2] 지원사업 가점 및 감점 기준

구분	항목	배점	적용 기준	적용예외
가점*	지역지식재산센터 추천, 업종단체 회원사**	5	최대 5점	-
	이노비즈 인증	5		
	WC300 지정	5		
	소송보험 가입 (보증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	5		
감점	과거 지원횟수(기본감점) (소액컨설팅으로 1년내 2차 신청시 동년도 1차 지원은 지원횟수에 미포함)	-30	3년내 3회(지원불가)	연계집중 컨설팅은 감점 비적용
		-10	3년내 2회	
		-5	3년내 1회	
	과거 지원내용*** (추가감점)	-30	제품 및 분석범위 동일 (지원불가)	
		-5	제품 또는 범위만 차이	

* 가점에 대한 사항은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 업무협약이 체결된 아래 지역지식재산센터, 업종단체에 한정

▪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강원(원주), 경남(창원), 광주, 군산, 대구, 대전, 부산남부, 서울, 울산, 인천, 전남(목포), 전북(전주), 제주, 진주, 춘천, 충남(천안), 충북(청주), 순천, 경북, 구미, 태백, 충주, 서산, 경기남부

▪ 업종단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RFID/USN협회

*** 과거 지원내용과 현재 신청내용의 차이 유무에 따라 판단

[별첨3] 컨설팅 상위평가(S등급) 수행기관 리스트 및 관리방안

□ '15년도 컨설팅 상위평가(S등급) 수행기관 리스트

(가나다 순)

구 분	기술분야	수행기관
2015년	전기/전자	특허법인 신지
		지우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아주
		(주)지팩스
		경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화우
		특허법인 정안
		특허법인 AIP
		특허법인 동천
		한양 특허법인
	IT/정보통신	S&IP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TNI
		(주)크레오시안
	기계/기구	예준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장울국제특허법률사무소
		한양 특허법인
		특허법인 아주
		DN특허법률사무소(서울본사)
		유미 특허법인
		특허법인 정안
		해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
		다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웰
		태하 특허법률사무소
		(주)올바른아이피엔컨설팅
		특허법인 명인
	화학/약학	특허법인 플러스

		미주국제특허법률사무소
		STN국제특허법률사무소
		지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상표	특허법인 아이피에스
		법무법인 다래
		성암국제특허법률사무소
		강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한강국제특허법률사무소
		지심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C&S
		예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브레인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다해
		KBK 특허법률사무소
		(주)올바른아이피엔컨설팅
		다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로재국제특허법률사무소
		우리특허법률사무소
		김앤장 법률사무소
		파이특허법률사무소

* '15년도부터 기술분야별 등급 산정

□ '13~'14년도 컨설팅 상위평가(S등급) 수행기관 리스트

(가나다 순)

구 분	기술분야	수행기관	제품류
2014년	전기/전자	다래전략사업화센터	전자제품
		특허법인 다해	전자제품
		특허법인 다해	반도체
		특허법인 동천	LED 조명
		예준 특허법률사무소	반도체
		올바른특허아이피엔컨설팅	LED 조명
		특허법인 웰엘엔케이	카메라 렌즈
		특허법인 웰엘엔케이	디스플레이
		특허법인 이상	전자회로
		특허법인 정안	자동차 전자부품

		지혜안 특허법률사무소	난방제품
		한맥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전자부품
		해솔 특허법률사무소	의료기기
	IT/정보통신	더남 특허법률사무소	어플리케이션
	기계/기구	네이트 특허법률사무소	농기계
		특허법인 다해	자동차 부품
		특허법인 대아	의료기기
		특허법인 두호	자동차 부품
		특허법인 명인	절삭 공구
		에스앤아이피 특허법률사무소	액츄에이터
		특허법인 유아이피	문구용품
		특허법인 유아이피	주방용품
		특허법인 정안	자동차부품
		특허법인 정안	선박부품
		특허법인 천지	금형기계
		프라임 특허법률사무소	단말기
	화학/약학	다민 특허법률사무소	식품
		안소영 특허법률사무소	의약품
		특허법인 웰엘엔케이	공정장비
2013년	전기/전자	특허법인 다래	전자제품
		우주 특허법률사무소	전자제품
	IT/정보통신	특허법인 아주	방송통신 장비
		특허법인 MAPS	음향기기
	기계/기구	5T 특허법률사무소	의료기기
		특허법인 가산	미용기기
		특허법인 다해	자동차 부품
		특허법인 이룸	의료기기
	화학/약학	특허법인 다나	의약품
		프렌즈 특허법률사무소	잉크
		STN 특허법률사무소	공정기술
	상표	특허법인 다인	전자제품

□ 컨설팅 최하위 평가기관의 사업수행 제한

○ '15년도 등급별 관리방안

- 컨설팅 최하위(D등급) 평가기관은 '16년도 사업참여 제한

※ 최하위 평가기관은 분쟁대응전문가별 개별통지 예정

○ '16년도 등급관리 계획(안)

- '16년도 사업 수행 후, 수행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관리 예정

※ 평가기준('16) : 중간보고, 최종보고, 기업만족도, 사업원활도 등

구 분	등급 범위(점수범위 기준)	등급의 효력
S	상위 30% 이내 (전체30%)	우수 수행기관 공지
A	상위 30~50% (전체 20%)	기업요청 시 추천
B	하위 30~50% (전체 20%)	선정심사 시 과업계획 심층검토
C	하위 10~30% (전체 20%)	선정심사 시 과업계획 심층검토, 컨설팅 관리 강화 멘토링
D	하위 10% 이하 (전체10%)	사업 참여 제한

□ 우수사례 선정 수행기관

기술분야	수행기관	책임연구원
전기/전자	한맥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선호 변리사
전기/전자	지우국제특허법률사무소	조현석 변리사
기계/자동차	특허법인 아주	이창훈 변리사
상표/디자인	특허법인 아이피에스	김미성 변리사
화학/약학	STN국제특허법률사무소	곽현규 변리사
협약체	현신평특허법률사무소	정부연 변리사

* '15년도 우수사례 모집신청 및 우수사례 선정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정됨

* '14~'15년도 S등급 수행기관 리스트 중 굵은 글씨로 표시